

의안번호	2216145
의 퇴 인	정희용 의원
회 답 일	2026. 2. 11.
추 계 번호	26E0313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경작기간 요건 완화
(직접 경작기간 8년 → 3년)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안 제69조 제1항 (자경농지에 대한 양도 소득세의 감면)	-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경작기간 요건을 종전 8년에서 3년으로 완화 (현행)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농사 (개정안)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<u>3년 이상</u> 직접 농사

II. 미첨부 근거규정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69조 제1항 (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제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직접 경작기간 요건을 현행 8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,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감면 대상 농지가 증가하여 양도소득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
 - 현행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은 경우에 해당 농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의 100%를 감면
 - 해당 감면은 양도소득세 감면액 총합한도(1년간 1억원, 5년간 2억원)를 적용받음
 - 개정안은 양도소득세 감면의 경작기간 요건을 3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임

-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경작기간 요건 완화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, 요건 완화에 따라 추가로 감면 대상이 되는 경작기간 3년 이상~8년 미만의 자경농이 향후 농지를 양도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양도차익 규모 등을 추정하여야 하지만, 이와 관련된 자료가 부재하므로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
 - 국세청 확인 결과, 해당 감면 신청 시 자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¹⁾를 제출받고 있으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의 현황까지 파악할 수 없으며, 향후 추가적인 감면 대상자들이 농지를 양도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양도차익규모 등도 예측이 어려움
 - 참고로 최근 5년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모는 다음과 같음

[표 1]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실적

(단위: 억원)

	2021	2022	2023	2024	2025p
감면실적	20,459	16,482	10,664	9,033	6,563

주: p는 잠정치임

자료: 정부의 「조세지출예산서」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,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수입감소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1) 농지대장,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토지이용계획 확인서, 조합원증, 경작확인서, 농기구 구매 영수증 등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이정훈	박연서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정훈	02-6788-4669	nororand@assembly.go.kr